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9.

발 의 자 : 인요한 · 김은혜 · 조승환
곽규택 · 김위상 · 임종득
김 건 · 구자근 · 성일종
장동혁 · 김도읍 · 김미애
정점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「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, 12·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‘큰기러기’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,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

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38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포획활동)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획의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생 략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8. (생 략) ④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</u>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<u>제26조의2(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포획활동)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포획의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